

심사대상 : 작업장

2025년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 결과보고서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심사위원

성명	서명	안전 역량	안전수준				안전 성과
			작업장	건설현장	시설물	연구시설	
김 지 애	김 지 애	○	○				○
조 명 호	조 명 호	○	○				○

본 심사의 주된 사항은 개별 소관법령에 따라 실시한 안전평가 결과와 각 기관에서 제출한 안전경영책임보고서를 근거로 진행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I 기관 현황

기관명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기관장 (25년말 기준)	김현준									
소재지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400											
설립목적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지원 및 같은 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 의해 위탁받은 사업을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공정하고 효과적인 사회보장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주요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 주요 정보시스템 구축·운영·교육·상담 ○ 위기아동, 위기가구 등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 사회서비스 사업 및 급여 관리 ○ 보건복지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통합 관제업무 지원 ○ 사회보장 정책정보 및 통계 생산·분석·제공, 조사·연구 등 											
기관유형	준정부기관 - 위탁집행형		주무부처	보건복지부								
심사유형	I		작업장	건설현장	시설물	연구시설						
			100%	비해당	비해당	비해당						
안전관리 등급	'25년도(예비)				'24년도				'23년도			
	종합	역량	수준	성과	종합	역량	수준	성과	종합	역량	수준	성과
	3	4	4	2	-	-	-	-	-	-	-	-

II 총 평

- 기관은 '25년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 결과 종합 3등급을 획득하였으며, 안전역량 및 안전수준 부문에서 각각 4등급으로 평가되어 전반적인 안전관리 체계의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된다.
- **(안전역량)** 4등급으로 심사되었으며, '체계역량' 분야의 '안전관리규정 및 절차·지침' 지표, '관리역량'의 '재해조사 및 비상상황 대비·대응 능력' 및 '도급사업의 안전보건 관리'에서 가장 낮은 득점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안전보건경영 리더십'이 양호하게 심사되어 향후 역량 강화를 바탕으로 한 성과가 기대되는 바이다.
- **(안전수준)** 4등급으로 심사되었으며, '작업장' 분야의 '작업장 기본 안전보건관리 수준'이 E등급으로 가장 낮게 평가되었고, 전반적으로 D등급으로 나타나 평가 결과를 참고한 체계적인 작업장 안전보건관리 강화가 권장된다.
- **(안전성과)** 2등급으로, 사고사망자 발생이 없었다. 그러나 '안전경영책임 활동 및 성과' 지표가 C등급으로 향후 책임 활동의 내실화를 통한 등급상승이 기대된다.

Ⅲ

범주별 개선 필요사항

○ 안전역량

개선 필요사항

1. 상생협의회 협의사항에 안전보건 관련 주제 포함하여 운영 필요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대면실시 및 분기별 실시 등 필요
3.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세부 추진 과제별 편성의 근거 제시, 수급업체 안전보건 관리 예산 편성 기준 검토' 등 항목별 조사 분석 및 환류 실시를 통해 적정 안전 예산 편성 필요
4.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적용범위를 수급인, 관계수급인, 이해관계자까지 보호할 수 있도록 확대 적용
5. 안전보건관리규정 내 '기계·기구 및 설비 방호조치' 등 관련 법에 따른 사항을 누락 없이 반영하고, 하위규범을 명시하여 세부 절차의 연계성 강화
6. 관련 절차서에 따라 소관부서와 함께 법규 검토를 실시하여, 변경 내용을 규정, 절차서, 지침서 등에 신속 반영 필요
7. 안전경영책임 목표 및 세부계획 수립 및 이행을 위한 절차 준수, 오류 개선을 위한 개정 필요
8. 안전경영목표 설정에 대한 일원화 필요
9. 위험성평가 추진계획에 대한 책임자의 결재 등 필수 기재사항 반영 등 절차서 준수 필요
10. 근로자의 위험성평가 전 과정 참여, 평가 참여자의 역할과 임무 명시 등 중요사항 절차서에 반영
11. 허용 불가능한 위험성에 대한 감소 대책 실시 여부 및 재평가 관리 이행 및 관리 강화
12. 작업환경측정 예비조사를 통해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작업환경 관리의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
13. 안전보건교육 운영 적정성 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및 점검 계획 수립 및 교육 결과 분석을 통한 교육 효과성 향상 방안 검토 필요
14. 비상 상황에 대한 훈련 시기, 방법, 참여 인원 등에 대한 연간 훈련 계획 수립 필요
15. 자동심장충격기(제세동기)에 대하여 관리대장을 작성 및 주기적 점검·관리 필요
16. 규정 내 적격수급업체 선정 및 안전보건협의체 운영의 세부 근거 마련 및 이와 연계된 절차서, 매뉴얼 등 개정
17. 수급인에게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하는 절차 마련 및 준수 필요
18. 일시적 도급작업 시 작업허가서를 기관의 권한과 책임에 따라 진행하는 체계 마련

○ 안전수준

개선 필요사항

[작업장]

1. 위험구역 임의 출입 방지를 위해 잠금장치 보완 및 출입대장 관리 등 필요
2. 현장 유해위험물질 경고표지 추가 및 교육 강화, 최신 정보 유지를 위한 정기적인 MSDS 점검 체계 마련
3. 보호구 지급 기준 관련 지침 보완 및 보호구의 지급 및 착용에 대한 관리체계 재정비 필요
4. 기관이 보유한 기계·기구에 대한 현황 관리 최신화 및 외부 반입 장비에 대한 안전전담부서의 사전 검토 절차 수립·관리 필요
5. LOTO 장비 확보 및 관리 현황 파악 등 지침서에 따른 작업 절차 준수 필요
6. 가스계 소화설비 설치 공간의 잠재적 위험에 대한 추가적인 안전조치 실시
7. 일반위험작업 허가서 내 위험물질의 구분 및 중량물 취급 작업 여부 사전 확인하는 절차 포함하도록 양식 개선 등 필요

○ 안전성과

개선 필요사항

1. 임원 등의 안전활동 성과측정의 목표와 내용을 명확히 구분하고, 정량적인 평가로 개선이 필요하며, 실적은 목표에 따른 예산까지도 포함하여 객관적 평가 실시

IV 심사 결과

구 분		등급
종합등급 (1,000점)		3
① 안전역량 (300점)		4
② 안전수준 (350점)		4
위험요소별 등급	작업장	D
	건설현장	비해당
	시설물	비해당
	연구시설	비해당
③ 안전성과 (350점)		2

범 주	심사 분야	심 사 지 표	배점	등급
안전역량 [300점]	① 안전역량 배점 및 등급		300	4
	1. 체계 역량	소 계	140	D
		① 안전보건경영 리더십	30	B
		② 안전보건경영체제 구축 및 역량	40	D
		③ 안전보건경영 투자	30	D
		④ 안전관리규정 및 절차·지침	20	E
		⑤ 안전관리 목표 및 안전경영책임계획 수립	20	D
	2. 관리 역량	소 계	160	D
		① 위험성평가 실시 체계	30	D
		② 노동자 건강 유지·증진 활동 체계	20	C
		③ 안전보건교육·안전인식·활동참여	20	C
④ 재해조사 및 비상상황 대비·대응 능력		20	E	
	⑤ 도급사업의 안전보건 관리	70	E	
안전수준 [350점]	② 안전수준 배점 및 등급(분야별 가중치 적용)		350	4
	1. 작 업 장	【작업장 안전관리】	350	D
		① 작업장 기본 안전보건관리 수준	60	E
		② 기계·전기 설비 위험방지 및 추락예방 조치	120	D
		③ 화재 및 화학물질사고 예방활동 수준	90	D
④ 위험 작업 및 상황 안전관리		80	D	

※ 분야별
가중치
적용 후
환산

범 주	심사 분야	심 사 지 표	배점	등급
안전수준 [350점] ※ 분야별 가중치 적용 후 환산	2. 건설 현장	【건설현장 안전관리】	350	비해당
		① 건설발주현장의 안전보건관리 업무 체계	20	비해당
		② 건설공사의 착공 전 안전보건활동	50	비해당
		③ 건설공사의 착공 후 안전보건활동	80	비해당
		④ 건설발주현장의 안전보건 여건	25	비해당
		⑤ 건설안전 환경 조성	70	비해당
		⑥ 안전시공 작동 수준	105	비해당
	3. 시설물	【시설물 안전관리】	350	비해당
		① 시설물 관리계획 수립 수준	20	비해당
		② 시설물 안전을 위한 조직의 노력	20	비해당
		③ 시설물 안전점검 실시	40	비해당
		④ 시설물 유지관리 체계 구축 및 운영 수준	90	비해당
		⑤ 시설물 사고 및 안전성능 수준	30	비해당
		⑥ 시설물 보수·보강 및 노후화 대비	40	비해당
		⑦ 시설물 안전 전문성 강화 노력 수준	40	비해당
	⑧ 대국민 안전확보를 위한 안전관리 수준	70	비해당	
	4. 연구 시설	【연구시설 안전관리】	350	비해당
		① 연구실 안전관리 기반 조성	50	비해당
		② 연구실 연구장비 위험방지	40	비해당
		③ 연구실 전기설비 위험방지	40	비해당
		④ 연구실 시약류 취급 및 보관	50	비해당
		⑤ 연구실 화재 예방	40	비해당
		⑥ 연구실 고압가스 취급 및 보관	50	비해당
		⑦ 연구실 연구환경 및 연구자 보호	40	비해당
⑧ 연구실 생물체(LMO) 감염 예방	40	비해당		
안전성과 [350점]	③ 안전성과 배점 및 등급		350	2
	공통	① 안전관리등급 심사결과 개선 필요사항 이행수준	60	결측
		② 안전경영책임 활동 및 성과(안전경영책임보고서)	100	C
		③ 대국민 안전문화 확산 노력 및 성과(안전경영책임보고서)	40	B
		④ 사고사망 감소 성과 및 노력도	150	A

※ 등급부여 기준(100점 기준 환산점수 적용)

구 분	총 점	1등급(A)	2등급(B)	3등급(C)	4등급(D)	5등급(E)
배 점	100점	90점 이상	80점 이상	70점 이상	60점 이상	60점 미만

1 「안전역량」 범주 심사

1. 체계역량
2. 관리역량

1. 체계역량

[1] 안전보건경영 리더십

핵심가치

최고경영자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두어야 하며, 안전보건경영방침을 전 임직원이 인지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실천하여야 한다. 아울러, 안전보건경영방침은 기관의 사업특성과 제반 안전보건 여건을 반영하여야 하며, 전 임직원이 공유하여야 한다.

심사의견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하 '기관'이라 한다)의 기관장은 안전경영 시스템의 안정화와 직장 문화의 활성화가 사내 안전문화 정착의 밑거름이라는 신념하에 안전경영을 수행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기관의 안전보건수준 발전을 위해 사옥 11층에 상주하고 있는 15개 협력업체들과의 주기적인 간담회 개최뿐만 아니라 불시에 순찰하여 건물의 화재 및 감전 등 안전 관련 사고 예방을 위한 현상 파악 및 문제점 도출에 따른 관리 방안 설정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응급안전서비스 운영을 위한 시스템 점검 및 서버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내 수급업체들과 안전보건협의체와 상생협의체를 조직화하여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안전보건 관련 의사소통을 효율적으로 도모하여 도급안전관리의 현행화에 매진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특히 법적 필수 이행 사항은 아니지만 자체적으로 산업안전위원회를 반기 1회씩 시행하고, 사내 노조가 설립되어 있지 않지만 근로자 대표가 선임한 직원들과 노사협의체를 구성하여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안전경영 관련 노사 소통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안전보건 조직의 경우 기관장이 안전보건 총괄책임자로 지정되어 있고, 직속 기관인 안전경영지원부를 안전보건관리 전담부서로 운영하고 있었으며, 본 부서에는 안전관리자, 소방관리자, 보건관리자, 건강관리자를 전담 인력으로 배치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또한 안전보건 관리 업무의 효율 극대화를 위해 해당 구성원들의 승진 실적도 확인된다. 다만 실적 기여도에 따른 기관장의 주관적인 판단하에 진행되어 안전보건 전담 구성원들의 지원 기준 규정의 문서화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안전보건 경영방침 수립 및 공유 측면에서 기관장은 업무 전문성을 활용한 사회 안전망과 정보 보안의 강화, 안전보건 법규 준수 및 안전보건 역량 강화를 통한 산업재해 예방, 기관의

안전보건 경영체계 개선으로 자율 안전보건체계의 발전, 국민과 수급업체 직원의 안전을 기관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확립의 네 가지 안전보건 경영방침으로 개정된 것으로 확인된다. 이는 기관의 안전보건경영 추진 목표인 국민의 안전 보장, 직원들의 안전보건 역량 강화, 안전보건 경영시스템의 내재화, 안전가치의 최우선에 부합되는 것으로 안전경영에 대한 기관장의 실천 의지 또한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안전보건 경영방침 수립을 위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보건협의체, 상생협의체 운영을 통해 사내 직원 및 수급업체 직원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반영한 것이 확인된다. 또한 부서별 자율 안전활동에 대한 실천 서약서를 공포하고, 안전보건 경영방침 관련 인쇄물들을 제작하여 사내 다수의 게시판에 제시하며, 홈페이지 및 QR 코드를 활용하는 등 다각도로 기관 및 수급업체 직원들과 적절히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최고경영자의 안전보건활동 참여 측면에서 기관장은 기관 내 안전 취약요소를 도출하고 개선하여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업장 합동 안전보건점검을 연 2회 수행하였음이 확인된다. 점검 대상은 기관 건물의 전 층(2층, 11~20층)으로 사무 공간 정리정돈 사항, 비상통로 확보 및 관리 상태, 공용시설 관리상태, 냉장고 정리 등 보건위생 관련 사항 및 추가 취약점 도출을 중점 사항으로 하여 체크리스트 방법으로 점검하였다. 이를 통해 취약점 및 개선사항을 공유하고 본부별 재점검 및 조치를 취하는 등 현장 안전경영의 내실화를 도모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정보화사업 협력파트너사 대표자 간담회를 통한 소통 및 협력 강화 추진을 목적으로 상생협의회를 개최하였으나, 안전보건 관련 주제가 아닌 다른 내용들이 주로 협의된 것으로 확인되어 이에 대한 보완 검토가 요구된다. 작업장 합동 안전보건 점검을 통해 개선 사항으로 공용 안전물품의 보관상태 및 수량이 본부별 상이, 다양한 비상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추가 필요 물품이 없는지의 검토 필요, 프로젝트룸 입주사 근로자의 근골격계 질환 예방과 안전한 작업을 위해 물품(중량물) 반입/출 시 사용할 수 있는 운반용구 지급 필요, 멀티탭 과부하·과전류, 문어발식 연결에 대한 위험성과 안전수칙을 전파하고 전기화재 예방 당부를 제시한 것이 확인된다. 또한 개선 방안으로 보유 물품 중 이용 가능한 손수레 프로젝트룸 비치, 11월 안전점검의 날을 통해 공용 안전물품 정비, 추가 공용 안전물품 수요조사 및 물품의 구매 비치 등 현장 안전경영에서 도출된 중요 사항들의 이행 지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개선 필요사항 요약】

1. 상생협의회 협의사항에 안전보건 관련 주제 포함하여 운영 필요

[2] 안전보건경영체제 구축 및 역량

핵심가치

공공기관은 기관 규모와 사업의 종류에 적합한 안전관리체제를(안전관리조직 구성, 안전관리 업무 총괄 권한 부여 등) 구축하고, 안전관리조직 구성원의 전문성 향상, 동기부여 등 안전관리조직 운영 내실화에 힘써야 한다. 또한, 안전근로협의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등을 법정 기준 이상으로 운영하여야 하고,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심사의견

기관은 9개 본부, 1개 연구소, 2개의 실, 35개의 부(센터)로 구성되며 약 75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고, 안전보건 업무 수행은 기관장 직속이 아닌 경영기획본부 안전경영지원부 소속으로 되어 있고, 직제규정의 조직도 등 대외적인 조직도에서 안전보건 조직을 확인하는 것도 어려웠다.

기관은 「안전보건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원장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지정하였고, 본부장, 실장, 단장을 관리감독자로 지정하고 하부조직으로 안전지킴이를 두어 관리감독자를 보좌하고 해당 본부의 안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등 실행력을 강화하였다. 다만, 관련 규정에 안전지킴이의 수행 업무 및 범위 등이 누락 되어 있으니 해당업무를 명확히 지정하여, 현장 실행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고, 관리감독자가 본부장, 실장, 단장급으로 지정되어 실질적인 안전 업무 수행이 이루어지기 어려우므로 부서장급으로 변경하여 실질적인 안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권고한다.

안전관리업무는 규정, 「직제규정」, 「직제규정 시행규칙」, 안전경영부 업무분장표에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나, 안전관리 업무 담당자의 업무 분장에 시설(청사)관리 분야를 포함하는 등 안전 업무만 전담하기는 어려운 환경이며, 직무 역량의 제고를 위하여 자격, 전공,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전문적·체계적 안전보건업무 수행으로 안전 책임경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안전보건 업무의 정규 조직화와 안전보건 담당자의 관련업무 전담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부지역센터에 이어 대구경북지역센터가 개소됨에 따라 직제규정 시행규칙에 지역센터가 수행하고 있는 안전·보건 관리업무를 추가하기를 권장한다.

기관은 규정,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절차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지침서」에 의거 노·사 동수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분기별로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반기별로 실시하였다.

다만, 위원회 안전에 대한 개선 활동 노력은 적정한 수준으로 확인되나, 위원회를 서면 심사만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점과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 시기를 분기로 실시하는 점을 보완하여 실질적인 위원회 운영을 통해 근로자 의견 청취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개선 필요사항 요약】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대면실시 및 분기별 실시 등 필요

[3] 안전보건경영 투자

핵심가치

공공기관은 안전관리목표 달성을 위해서 충분한 안전 예산을 합리적으로 편성하고 적기에 집행하여야 한다.

심사의견

기관은 안전보건 예산 편성 측면에서 위험설비 정비 및 개·보수 및 안전 관련 물품 및 장비 구입비가 전년도 대비 증액되었고, 안전 투자 중점 사업으로 직군별 근로자 정서 지원 프로그램(EAP) 운영 강화를 위해 신규 항목의 예산이 증액된 것이 합리적인 예산 편성 활동으로 설정된 점이 확인된다. 다만, 안전 예산 편성 시 항목별 조사 분석 및 환류 과정이 다소 미흡하게 수행되었고, 수급업체 등의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도 적용되지 않아 이에 대한 보완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각 부서별 재난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활동의 세부 추진 과제별 예산 편성의 구체적인 근거 제시가 없어 적정성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더불어 수급업체의 안전보건 관련 관리 비용에 대한 예산 편성 기준 및 검토 수준이 미흡하여 이에 대한 보완 검토가 요구된다.

안전보건 예산 집행 측면에서 기관은 기관운영비, 정보화사업비, 수탁사업비, 전기이월사업비, 예비비·자체사업비로 구분하여 분기 및 본부별로 예산액 대비 집행율과 불용 예상액을 산출 관리하였고, 항목별 미집행 사유도 적정하게 검토하여 제시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증빙된 집행 내역이 안전보건 관련 자료 뿐만 아니라 기타 다른 항목들의 예산 집행 실적도 혼용되어 있어 향후 독립적인 안전보건 예산 집행 및 관리 검토 수준안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기관장 및 안전보건 전담부서의 관심과 노력이 요구된다. 또한, 현장 안전경영에 따른 추가 예산 확보의 필요성에 대한 객관적인 제시가 미흡하여 향후 안전보건 관련 예산의 증액 또는 감액 필요시 검토 활동을 안전보건 경영계획에 근거하여 체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

【개선 필요사항 요약】

1.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세부 추진 과제별 편성의 근거 제시, 수급업체 안전보건 관리 예산 편성 기준 검토' 등 항목별 조사 분석 및 환류 실시를 통해 적정 안전 예산 편성 필요

【4】 안전관리규정 및 절차·지침

핵심가치

공공기관은 안전관리 대상 사업·시설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제반 사항을 안전관련 법령*의 요구사항과 기관의 위험요인 및 작업 특성을 반영하여 안전관리규정 및 하위 절차서 등을 작성하여야 한다. 또한 규정 및 절차서·지침 등의 관리를 위한 제·개정 절차 등을 수립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등

심사의견

기관은 규정을 최상위 문서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안전보건 활동의 기초를 마련하고 있다.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과 「공공기관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의 주요 내용을 적절하게 반영하여 규정에 포함하고 있다.

다만, 규정에는 적용범위를 수급인, 관계수급인, 이해관계자, 국민까지 확대하여 보호할 수 있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중대시민재해 예방 및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비상조치계획, 피난 및 대응훈련 관련 사항을 추가로 검토하고 규정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기계·기구 및 설비 방호조치, 작업지휘자 배치, 유해·위험기계 등에 대한 안전검사, 근로자의 안전수칙 준수 등과 관련된 사항도 규정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도급사업 재해예방계획,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안전보건교육, 안전보건표지, 안전보건보호구, 위험성평가 등과 관련해서는 하위 규범을 안내하는 조문을 두어 세부 절차와 연계성을 높이고, 각 항목이 일관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기관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 45001)은 매뉴얼과 절차서(19종), 지침서(18종)를 마련하여 운영 중이다. 다만, 법령개정 및 환경변화 등 최신 정보를 반영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하다. 기관의 「법규 및 준수평가 절차서」에서는 연 1회 법규 검토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25년도에는 이행되지 않았다. 이에 기관은 안전보건관련법규 등록부에 「산업안전보건법」을 포함한 총 26개 법령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누락 된 항목이 없는지 소관부서와 함께 문서화 된 검토 절차를 거친 후, 변경된 세부 내용을 규정, 절차서, 지침서 등에 신속하게 반영하여 최신 상태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전반이 일관되게 적용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것을 권고한다.

「안전보건관리규정」은 기관의 최상위 규정으로, 그 의미와 최신화 유지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대·내외 환경변화와 법률 개정사항을 규정에 반영하며, 하위 규범으로 절차, 지침, 매뉴얼 등을 제정하여 규정에서 정한 의무와 활동이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작성하고, 법규 검토를 통해 누락된 항목이 없는지 확인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개선 필요사항 요약】

1.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적용범위를 수급인, 관계수급인, 이해관계자까지 보호할 수 있도록 확대 적용
2. 안전보건관리규정 내 '기계·기구 및 설비 방호조치' 등 관련 법에 따른 사항을 누락 없이 반영하고, 하위규범을 명시하여 세부 절차의 연계성 강화
3. 관련 절차서에 따라 소관부서와 함께 법규 검토를 실시하여, 변경 내용을 규정, 절차서, 지침서 등에 신속 반영 필요

[5] 안전관리 목표 및 안전경영책임계획 수립

핵심가치

공공기관은 조직·업무 특성, 사고통계 현황 등을 반영하여 안전관리 대상 사업·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목표와 전략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심사의견

기관은 ‘근로자 안전 최우선, 함께하는 안전문화’를 비전으로 자기규율을 통한 재해예방 역량 강화, 근로자 및 수급업체와의 소통·참여·공유 활성화, SSIS 맞춤형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의 3개 기본 방향과 9개의 추진 과제를 선정하여 ‘산업재해 ZERO, 최고 수준 안전관리역량, 안전의식 최고 기관’의 3개 안전경영목표 달성을 위해 안전경영책임계획을 수립하였다.

기관은 오송 분사무소를 포함하여 '23년 출퇴근 시 발생한 사고 외에는 현재까지 재해 발생이 없는 안전한 사업장이며 안전경영책임계획의 수립 시 경영기획본부 내 안전보건전담부서인 안전경영지원부서장을 책임자로 지정하여 계획 및 추진 과제를 정하고 실장 및 본부장급 15명의 관리감독자를 지정하여 수립된 안전경영책임계획 이행을 추진하고 있다.

'24년 안전경영책임계획에서 미흡했던 안전 관련 절차·지침의 내용과 구성의 최신화,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세부 과제를 개선하여 정보원 맞춤형 위험성 평가기법 개선, 안전보건 법규 및 내부규정 간 연계성 검토, 협력업체 안전보건 자율점검 체계 견인의 내용으로 '25년 안전경영책임계획에 세부 과제로 적절히 반영하고 있었다.

그러나, '25년 안전경영책임계획의 안전경영목표 및 세부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정해진 절차에 따라 각 부서로부터 의견 청취를 해야 하나 안전보건전담부서장은 의견수렴절차를 거치지 못하여 정보원의 이해관계자가 공동으로 달성해야 할 목표 및 실행 과제에 대해 충분한 상호이해가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 준수가 되지 못하였다. 또한, 안전보건담당부서장은 이사회 의결된 안전경영책임계획의 안전보건목표 및 추진계획을 각 부서별로 배포하여야 하나 6개월이 지난 시점에 뒤늦게 책임계획의 목표 및 추진 과제의 일부에 대해서만 배포되어 부서별 충분히 검토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지 못하였다.

규정에 따라 안전책임경영계획 수립 이후 안전보건책임자는 원장에게 목표 및 추진계획을 보고하도록 되어있지만 현재 안전보건책임자의 직제는 존재하지 않으며 안전보건책임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표기 오류라 해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원장으로 되어 있어 책임과 권한의 절차적 체계가 실제와 상이하다. 또한, 이사회에 의해 최종 승인된 안전경영책임계획의

내용을 근로자에게 교육 후 실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그러므로 안전경영책임계획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절차의 준수, 오류 개선을 위한 절차 개정 등을 통해 정보원의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안전보건 목표와 세부 과제를 즉시 알리고 전사적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안전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이행력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안전경영책임계획의 구성상, 정보원이 정한 안전보건경영방침에 따라 수립된 안전보건경영 4대 목표와 기본 방향 및 추진 과제를 포함한 3대 안전보건경영 목표가 각각 별도로 설정되어 있다. 이 두 가지 목표가 모두 안전경영책임계획에 수록되어 있어 최종적으로 달성해야 할 목표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으므로, 정보원 전 구성원이 일관성을 가지고 달성해야 할 안전경영목표 설정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기관은 안전경영책임계획을 수립하고 안전보건 목표 및 추진계획을 정기적으로 검토함에 있어 'SHE 운영관리 계획서'를 통해 목표와 세부 추진 항목별 담당자 지정, 추진 실적 정량화, 구체적 추진 일정의 월별 관리 등의 내용으로 이행점검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내용이 진행되지 않아 정보원이 정한 규정 준수를 통해 안전경영계획 이행에 대한 계획, 실행, 점검, 개선의 순환구조 체계화로 안전경영목표와 추진사업이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개선 필요사항 요약】

1. 안전경영책임 목표 및 세부계획 수립 및 이행을 위한 절차 준수, 오류 개선을 위한 개정 필요
2. 안전경영목표 설정에 대한 일원화 필요

2. 관리역량

[1] 위험성평가 실시 체계

핵심가치

공공기관은 안전조치 의무가 있는 직영·도급 사업 및 사업장에 대해 위험성평가 및 이행점검을 위한 절차를 수립하고 적정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또한 위험성평가 실시 절차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관련 법령 등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평가 전 단계에서 노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평가 결과 공유 및 활용하여야 한다.

심사의견

기관은 규정 내 위험성평가를 실시에 관한 내용을 명문화하고 있으며, 위험성평가 절차에 따라 세부적인 내용을 정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정기 위험성평가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정기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였다. 추진 계획 문서를 확인한 결과 기관의 절차서에 따라 계획 수립 시 반영되어야 하는 내용 중 일부가 누락된 채 계획이 수립된 것을 확인하였다. 더욱이, 추진계획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결재 증빙이 없어 계획의 최종 승인 여부가 불분명한 실정이므로 위험성평가 추진계획에 필수 기재 사항을 반영하고, 관리책임자의 최종 결재를 득한 증빙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관의 관련 절차를 확인한 결과, 근로자는 위험성평가 시행 및 개선계획 수립 시에만 참여하도록 명시되어 있어, 근로자가 위험성평가 전 과정에 참여해야 한다는 중요 사항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계획 문서에는 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등 각 평가 참여자의 역할과 임무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아, 절차서에 따른 역할 부여가 불분명하다. 따라서 근로자가 위험성평가 전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절차서를 개정하고, 연계된 계획수립 시에는 위험성평가 조직 구성에 따른 각 참여자의 역할과 임무를 명확히 기재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기관은 유해·위험요인 발굴을 위해 근로자 청취 조사를 실시하여 근로자의 참여도를 높이고 실질적인 위험성평가가 이루어지도록 관련 활동을 진행하여 내실을 기하고 있다. 다만, 청취조사를 통해 발굴된 유해·위험요인이 위험성평가에 반영되지 못한 점은 보완이 필요하다. 또한, 기관 절차에 따라 작업 공정별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해야 하나 외부 컨설팅을 통해 파악된 요인만을 대상으로 위험성평가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더불어 기관이 운영 주체로서 관리하는 기계설비 및 현장에서 사용 중인 화학물질이 유해·위험요인으로 파악되지 않은 부분은 보완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위험성평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평가의 기반이 되는 유해·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평가 과정에 충실히 반영해야 한다.

기관은 위험성평가를 수행함에 있어 빈도·강도법으로 위험성을 결정하였으며, 절차서에 명시된 빈도·강도법과 허용 불가능한 위험성 기준이 실제 결정 시 적절하게 적용된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일부 허용 불가능한 위험성에 대한 감소 대책의 실시 여부와 개선 후 재평가 수행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 따라서 허용 불가능한 위험성에 대한 감소 대책 이행 상황을 철저히 관리하고, 재평가를 통해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수준으로 감소되었는지 명확히 기록해야 한다. 더 나아가, 위험성평가의 주체는 기관에게 있으므로 외부 컨설팅 용역에서 발굴된 유해·위험요인뿐만 아니라 자체적으로 발굴한 유해·위험요인에 대해서도 위험성 결정 과정을 거치는 것이 요구된다.

기관은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해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이행 점검을 수행하였지만, 위험성평가에 대한 기관 자체적인 피드백을 통한 회신이 없어 환류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행점검을 포함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위험성평가의 전반적인 내용을 점검하고, 감소대책 실행 완료 여부를 철저히 검토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위험성평가 실시 후에는 사후 교육을 통해 발굴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개선대책과 개선 방향뿐만 아니라 유사 사례 공유 등을 포함하여 안전 관련 내용을 다양하게 전달하고자 노력하였다. 하지만 해당 교육의 참여율이 전체 근로자 수 대비 낮아, 모든 근로자가 위험성평가와 관련된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교육 이외에도 다양한 방법을 통해 위험성평가 결과와 안전 관련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근로자의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련 방안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개선 필요사항 요약】

1. 위험성평가 추진계획에 대한 책임자의 결재 등 필수 기재사항 반영 등 절차서 준수 필요
2. 근로자의 위험성평가 전 과정 참여, 평가 참여자의 역할과 임무 명시 등 중요사항 절차서에 반영
3. 허용 불가능한 위험성에 대한 감소 대책 실시 여부 및 재평가 관리 이행 및 관리 강화

[2] 노동자 건강 유지·증진 활동 체계

핵심가치

공공기관은 노동자의 건강 유지·증진과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하여 건강진단, 작업환경측정과 더불어 직업병, 작업관련성 질환 예방을 위한 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고객응대 노동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실시하고 노동자 건강증진을 위한 인프라와 예방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심사의견

유해요인에 의한 직업병 예방 활동과 관련하여, 현재 기관은 전담 부서의 자체 판단에 따라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가 없다고 판단하여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 작업환경측정은 직업병 예방의 기초 자료를 확보하는 중요한 수단인 만큼, 고용노동부 지정 작업환경측정 기관을 통한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작업환경측정 비대상 여부를 공식적으로 확인·입증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통해 작업환경 관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향후 발생 가능한 직업병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수건강진단과 관련해서는 근로자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을 지침서에 포함하고, 이를 바탕으로 특수건강진단 실시 계획을 수립하여 야간작업에 노출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다. 다만, 화학적 인자나 물리적 인자 등 근로자가 추가로 노출될 수 있는 잠재적 유해 요인에 대한 조사와 파악 활동은 보다 면밀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특수건강진단 대상의 적정성 검토와 직업병 예방 효과를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기관은 사무 공간의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실내공기질 측정 계획을 수립하고, 미세먼지 등 8개 항목에 대해 정기적인 측정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측정 결과를 근로자에게 공유하고 개선계획을 수립하는 등 환류 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산화탄소 농도가 다소 높게 검출된 사항에 대해서는 환기 실시와 공기정화식물 배치 등 개선 조치를 이행한 활동은 근로자 건강 보호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작업관련성 질환 예방 활동 분야에서는 근로자의 작업관련성 질환 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해 P-D-C-A 사이클에 기반한 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으며, 뇌심혈관계질환, 근골격계질환, 감정노동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해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유해요인 조사와 개선방안 수립, 예방 교육 및 특강 실시, 관련 물품 지원 등 실질적인 예방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점은 의미 있는 활동으로 평가된다. 또한 직무스트레스 관리와 관련하여 근로자지원프로그램을 수립·운영하고, 전년도 추진실적 분석을 바탕으로 직무스트레스 진단, 심리상담, 힐링 프로그램 및 사후관리 체계를 연계하고 있는 점은 정신건강 보호와 직업병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고객상담센터 상담사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직무스트레스 관리 활동은 감정노동으로 인한 건강장애 예방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뇌심혈관질환 예방을 위해 보건소와 협업하여 대사증후군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사후관리와 포상 제도를 연계하여 참여를 적극적으로 독려한 점 역시 효과적인 예방 활동으로 판단된다.

기관은 근로자의 건강상태 조사·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건강증진 활동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건강증진 특강, 실습 교육, 1:1 교정 테라피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건강 인식 개선과 건강행동 변화를 유도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각 활동에 대해 만족도 조사 및 효과성 평가를 실시하고, 분석 결과를 차년도 건강관리 계획에 반영할 예정으로, 지속적인 건강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환류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향후 건강증진 활동의 정례화를 통해 근로자 건강관리의 지속성과 체계성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더불어 의료복지서비스 제공 기관과의 협약을 통해 근로자의 의료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통해 참여율 제고를 도모하고 있는 점은 근로자 건강증진과 조직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는 요소로 평가된다.

【개선 필요사항 요약】

1. 작업환경측정 예비조사를 통해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작업환경 관리의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

[3] 안전보건교육·안전인식·활동 참여

핵심가치

공공기관은 안전관리 대상 사업·시설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안전지식 습득 및 실천을 통한 안전보건인식 수준 향상을 위하여 안전보건교육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또한 소속 직원 및 작업장 노동자가 안전을 위한 개선과제를 제시할 수 있도록 신고·제안·포상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심사의견

기관은 규정과 안전보건교육 추진계획에 따라 '25년도 안전보건교육 계획을 수립하였다. 해당 추진계획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쳤으며, 교육 대상별로 다양한 교육과정을 선정하여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전 직원 안전의식 수준 향상 교육의 경우, 연간 4시간의 교육 이수 목표 달성을 위해 다양한 과정을 개설하고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수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한 학습 기회를 제공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교육 이수율을 내부 평가지표에 반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교육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점검 계획은 부재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전년도 교육 이수율과 추진 실적은 존재하지만, 이에 대한 별도의 분석이나 시사점은 없어 교육의 실질적인 효과를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므로 교육 모니터링 및 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 실적에 대한 분석을 통해 교육 효과성 향상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야 한다. 기관 전담 조직이 교육 현황을 자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권한을 마련하여 공식적인 계획수립과 공문을 통한 이수 독려 등 체계적인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

한편, 안전보건 의식 및 참여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기관의 관리자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면담을 실시하였다. 면담 결과, 구성원 모두가 안전보건경영방침 및 목표와 그에 따른 활동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위험성평가 시 역할과 임무에 대한 인지도가 전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위험성 평가 실시에 따른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부여하고, 이에 대한 조직 구성원들의 책임 의식과 인지도를 향상시킬 여지가 있다.

기관은 아차사고 발굴제도와 스마트폰을 활용한 안전신문고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특히 실시간 협업 웹 플랫폼을 활용하여 참여에 따른 피드백을 공유하는 체계를 갖춘 것은 긍정적인 부분이다. 또한, 안전활동 우수 직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포상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 근로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현장에 상주하는

협력업체 근로자들까지 해당 제도에 참여하는 것을 독려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제도의 효과성을 더욱 높일 여지가 있다.

【개선 필요사항 요약】

1. 안전보건교육 운영 적정성 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및 점검 계획 수립 및 교육 결과 분석을 통한 교육 효과성 향상 방안 검토 필요

【4】재해조사 및 비상상황 대비·대응 능력

핵심가치

공공기관은 안전관리 대상 사업·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사고), 비상상황 등에 대비하기 위한 지침·매뉴얼·절차서 또는 계획 등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심사의견

기관은 「비상시 대비 및 대응 매뉴얼」을 제정하고 주기적으로 개정하여 비상대응 절차 및 경보체계, 대피절차, 비상연락체계 구축 등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특히, 화재, 지진, 감염병 대응에 관한 시나리오를 구체적으로 가정하고 상황에 따른 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사실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매뉴얼 상 안전사고 항목과 관련하여 기관 특성에 적합한 구체적인 상황 시나리오를 가정하지 않아 훈련의 실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는 점은 아쉬움이 남는다.

기관은 연간 소방 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유관 기관인 소방서와 합동으로 화재발생 상황에 대비한 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실은 긍정적으로 평가되나, 지진·안전사고에 대한 훈련 시기, 훈련 방법, 훈련 참여 인원 등에 대한 연간 훈련 계획을 수립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

기관은 비상시 대비·대응 관련 시설·장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현황 파악을 하고 있고, 특히, 근로자별 지급되는 보호구와 소화기에 대하여 지급일자, 사용기한, 점검일자 등 구체적인 사항을 파악하여 유지·관리하고 있으나, 자동심장충격기(제세동기)에 대하여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점검·관리할 필요가 있다.

기관은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사고 원인 조사와 재발방지를 위한 지침인 「중대재해발생시 대비 및 대응 절차」를 마련하였다. 다만, 유관기관의 연락처에 오류가 있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변경하지 않아 최신화가 필요한 상황이고, 사고 발생 시 경영책임자, 안전관리 부서로의 보고 체계와 재해조사보고서 작성, 원인 조사, 개선 대책 수립 및 이행 절차를 마련하였으나, 조사반 편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사고 발생 시 실행력 부족이 우려된다. 이에 조사반 편성에 대한 방법, 내용에 관하여 구체화할 것을 권고한다.

【개선 필요사항 요약】

1. 비상 상황에 대한 훈련 시기, 방법, 참여 인원 등에 대한 연간 훈련 계획 수립 필요
2. 자동심장충격기(제세동기)에 대하여 관리대장을 작성 및 주기적 점검·관리 필요

[5] 도급사업의 안전보건 관리

핵심가치

공공기관은 도급사업 시 수급업체 노동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예방 조치를 누락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또한 수급업체(관계수급업체 포함)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 유지를 위해 인적·물적 지원, 정보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심사의견

도급사업의 안전보건관리와 관련하여 규정에 협의체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24년 일부 개정된 규정에는 도급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 안전조치를 실시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적격 수급업체 선정에 관하여 「수급업체 안전문화 확산 지침」에 적격 수급업체 선정 절차를 마련하였다.

다만, 기관의 최상위 규정인 규정에는 도급사업의 범위가 기관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한정되어 있고, 적격수급업체 선정과 안전보건협의체 등의 세부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으며 이에 연계된 절차서, 매뉴얼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따라서, 관련 규정 작성 시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도급 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 「도급시 산업재해예방 운영 지침」을 참고하여 관련 규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수급업체 안전문화 확산 지침」으로 작성된 절차는 기관의 본부·실·단의 조직에서도 적격수급업체 선정 절차를 이행해야 하는지 불명확하게 작성되어 있으며, 평가 주체는 누구인지, 어느 정도 규모나 계약의 종류에 선정 절차를 마련해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기관에서는 다양한 도급사업과 청사관리에 필요한 일부 용역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도급사업 안전활동에 대한 규정 외에는 절차서, 매뉴얼 등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안전보건관리계획서의 제출 요구 등 안전관리 능력이 있는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노력은 확인할 수 없었다. 또한, 데이터센터를 운영하면서 데이터센터 운영관리, 시설물 유지보수 등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사업 수행을 위해 당연히 수반되는 사업으로 그 부분을 도급을 준 것이라면 도급인으로서의 산재예방조치 의무를 부담할 수 있으므로 검토가 필요하다.

도급사업은 도급인의 사업장 내 모든 장소, 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경우로서 지배·관리하는 위험장소를 포함하여 확대하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적격 수급업체 선정은 수급업체 근로자 보호와 영세 수급업체의 산업재해예방 능력을 이끌어 내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므로, 기관은 적격 수급업체 선정과 환류 활동을 위한 노력과 더불어 그 실행 활동에는 상주 수급업체에 대한 재평가도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기관에서는 상생협의체 및 상생스쿨 등을 통해 소통창구를 마련하고, 수급업체의 불만사항 개선 및 교육 등을 실시한 것이 회의록을 통해 확인되었다. 그러나 안전보건 관련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방안, 심의·의결 사항, 시행 방안 등과 관련된 세부 계획과 실행 결과는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았고, 합동점검 및 순회점검 활동이 일부 누락되어 있다. 향후에는 안전보건협의체, 합동점검, 순회점검 등의 활동이 수급업체의 안전보건 역량강화를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내실있게 운영되어야 한다. 또한, 관련 활동이(P-D-C-A) 사이클에 기반하여 계획-실행-점검-개선으로 체계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실행력을 갖춘 운영 체계 마련이 요구된다.

기관은 상주수급업체에 대해 전담부서에서 교육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다만, 일부 시설, 청소 등 근로자들에게 제공하는 교육자료 및 교육에 대한 환류, 자료의 이용, 교육의 실시 등 확인하고 환류를 실시하는 과정이 마련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기관에서는 11층 휴게공간을 상주수급업체 및 비상주수급업체 근로자들이 상시 사용하도록 제공하고 있다. 다만,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위생시설(세면·목욕·세탁·탈의·수면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장소 제공 또는 이용에 적극 노력할 필요가 있다.

기관은 유해·위험 작업에 대하여 그 작업을 수행하는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작업 시작 전에 수급인에게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문서로 제공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개의 현장 모두 제공된 내역을 확인할 수 없었다.

또한, 일시적 도급작업을 실시할 때 일반작업허가나 위험작업허가를 기관의 권한과 책임에 따라 절차가 진행되는 체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작업을 발주하고 시설에 대하여 1차적인 책임을 갖는 부서의 관리감독자가 직접 승인을 하는 체계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개선 필요사항 요약】

1. 규정 내 적격수급업체 선정 및 안전보건협의체 운영의 세부 근거 마련 및 이와 연계된 절차서, 매뉴얼 등 개정
2. 수급인에게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하는 절차 마련 및 준수 필요
3. 일시적 도급작업 시 작업허가서를 기관의 권한과 책임에 따라 진행하는 체계 마련

2 「안전수준」 범주 심사

1. 작업장 안전관리

[산업안전보건법,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1. 작업장 안전관리

[1] 작업장 기본 안전보건관리 수준

핵심가치

공공기관은 노동자 및 이용국민이 사무실, 작업장 등을 안전하게 이용하거나 작업할 수 있도록 통로 확보 및 정리정돈, 출입문 및 비상구 유지·관리, 위험요소에 대한 경고, 적정 보호구 지급 및 착용 안내 등 기본적인 안전관리활동을 실행하고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심사의견

기관은 규정 및 지침에 기본적인 안전관리 사항을 명시하고 있으며, 통로 및 비상구 확보, 정리정돈, 안전보건표지 부착·관리, 보호구 지급·관리 등 기본적인 안전보건관리 상태를 평가하기 위해 UPS실, 비상발전기실, 데이터센터, 오픈회의실, 직원 휴게실, 옥상 등 순으로 현장을 확인하였다.

기관은 사무공간 운영에 있어 이동통로와 정리정돈 상태가 적정하고, 근로자가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은 설치·관리 기준을 준수하여 운영하고 있다. 다만, 일부 사다리식 통로 등에 잠금장치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아, 관계자 외 인원이 임의 출입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잠금장치를 보완하고 출입 대장을 통한 관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일부 창고 등에는 물품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로 있거나, 창고의 적재대 상단에 무거운 박스 등이 쌓여 있어 정리 정돈 및 이동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기관의 데이터센터는 관계자 외 출입금지 구역으로 설정하고, 잠금장치 및 출입관리카드 시스템을 통해 출입을 관리하며, 출입금지 표지, 보호구 착용 표지, 화학물질 경고표지 등을 부착하고 있다.

기관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는 지침, 목록 관리를 통해 사용하고 있는 화학물질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다만, 현장의 근로자들에게 사용하는 물질의 명칭, 유해·위험성, 취급 주의사항, 보호구 사용법, 응급조치 요령 및 경고표지에 대한 세부내용을 추가하여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모든 저장용기에 MSDS 경고표지를 부착하고, MSDS 경고표지와 실제 물질이 일치하는지에 대한 정기적인 확인과 점검을 통해 MSDS를 최신 정보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관은 안전보호구 관리에 있어서는 개인보호구 지급 및 관리 지침에 따라 작업 대상별

착용해야할 보호구, 지급 대상 및 주기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각 부서에서는 업무에 필요한 개인보호구를 파악하여 적절히 지급 및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다만, 현재는 안전모, 화재용 방독마스크, 구조 손수건을 공통 지급하고 있어 업무 특성을 고려한 안전업무, 현장 출장 시 필요한 보호구 종류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보호구 지급 기준에 대한 지침을 보완하고, 보호구의 지급 및 착용에 대한 관리 체계를 재정비하고 보호구의 올바른 착용을 위한 교육 및 지원도 병행되어야 한다.

【개선 필요사항 요약】

1. 위험구역 임의 출입 방지를 위해 잠금장치 보완 및 출입대장 관리 등 필요
2. 현장 유해위험물질 경고표지 추가 및 교육 강화, 최신 정보 유지를 위한 정기적인 MSDS 점검 체계 마련
3. 보호구 지급 기준 관련 지침 보완 및 보호구의 지급 및 착용에 대한 관리체계 재정비 필요

[2] 기계·전기 설비 위험방지 및 추락예방 조치

핵심가치

공공기관은 (전기)기계·기구·설비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법정 위험예방조치를 실시하고, 항상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은 안전관리대상 사업·시설에 종사하는 노동자 및 이용객의 추락 방지와 시설·설비 등의 붕괴·도괴 방지 등을 위한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심사의견

기관은 기계실 및 전기실, 전산 관련 공간, 사무공간 및 창고, 옥상 등 다양한 시설을 사용하고 관리하고 있다. 다만, 관련 법령에 따른 법정 검사 대상 시설물은 별도의 건물관리 주체가 주관하여 검사를 수행하고 있다.

기관에서 자체 보유 또는 반입되는 기계·기구 및 설비에 대한 관리 현황 및 사용에 대한 적정성을 확인하였다. 현장 확인 결과, 일부 공간에 A형 사다리가 있으나 파악 및 사용에 대한 관리에 공백이 있으며, 외부업체가 에어컨 청소 작업을 위해 이동식 사다리를 반입하여 사용하고 있었으나 안전전담부서의 위험작업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모든 기계·기구에 대한 보유 현황을 명확히 하고, 외부 반입 장비에 대한 안전 전담부서의 사전 검토 절차를 수립하여 관리해야 한다.

현장 내 전기기계·기구 또한 전반적으로 양호하게 관리되고 있으나 일부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일부 분전반 확인 시, 충전부 보호조치는 적정하였으나 시건 되지 않은 채 열려 있었다. 또한, 일부 공간에서 차단기가 없는 형태의 이동식 전기릴선이 사용되고 있었다. 잠금장치 관리를 강화하고, 차단기가 내장된 릴선 사용 등의 조치를 이행하여 감전 재해 예방조치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기관의 「안전작업 허가 지침」에는 감전 위험 작업 시 허가서 발급 및 LOTO 장비 사용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 확인 결과, 비상발전기 및 UPS와 같은 주요 전기 설비에 대한 유지보수 시 활용되는 LOTO 장비의 보유 여부 및 관리 현황을 확인할 수 없었다. 이는 지침의 절차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관련 설비 유지보수에 필요한 LOTO 장비를 확보하고, 해당 장비의 관리 현황을 명확히 하는 등 지침서에 따른 작업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기관에서는 「작업장 안전조치 지침」과 월별 안전보건 점검을 통해 현장 내 추락 및 낙하

위험 방지 활동이 수행되고 있다. 현장 확인 결과, 옥상 냉각탑 부분의 사다리에는 등반이율이 설치되어 있으나 관계자 외 인원의 출입을 통제하는 표지가 미부착 상태인 것을 확인했다. 또한, 서고 및 창고의 랙 상단부에 적재물이 정리되지 않아 낙하 위험이 존재한다. 따라서 사다리 주변에 출입금지 표지를 부착하여 관리적 통제를 강화하고, 적재물에 대한 정리정돈을 철저히 하여 잠재된 위험을 제거해야 한다.

【개선 필요사항 요약】

1. 기관이 보유한 기계·기구에 대한 현황 관리 최신화 및 외부 반입 장비에 대한 안전전담부서의 사전 검토 절차 수립·관리 필요
2. LOTO 장비 확보 및 관리 현황 파악 등 지침서에 따른 작업 절차 준수 필요

[3] 화재 및 화학물질사고 예방활동 수준

핵심가치

인체에 유해하거나 화재·폭발 위험이 있는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공공기관은 위험물질에 의한 폭발·화재·누출 사고 예방과 노동자 중독·질식사고 예방 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심사의견

기관은 화재 예방과 관련된 지침과 '25년 소방계획서에 따라 화재 예방 및 대응 체계를 갖추고 있다. 수행한 소방시설 점검 결과의 지적사항을 개선하고, 소방서와의 합동훈련을 통해 실질적인 화재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등 전반적으로 적정한 관리 수준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 기관은 매월 현장 안전보건 점검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화재 위험 요인을 관리하고 있으며, 매월 중점 점검사항을 달리하여 화재 예방 활동에 대한 관리 수준을 높였다.

한편, 인화성 물질에 대한 화재·폭발 예방조치 또한 적정하게 수행하고 있다. 현장 확인 결과, 비상발전기(경유) 탱크 주변에 모래와 울타리 형태의 방유제를 설치하여 누출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또한, 화학물질은 「물질안전보건자료관리 지침」에 따라 화학물질을 관리하고 있으며, 현장 확인 시 보유하고 있는 화학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가 적절하게 비치되어 있었다. 다만, 물질안전보건교육의 실시여부는 확인할 수 없어 관련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이 근로자에게 주지되었는지 알 수 없어 해당 부분은 보완이 필요하다.

기관의 가스계 소화설비가 설치된 공간은 잠재적 위험에 대한 추가적인 안전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전산실과 같은 공간은 설비 작동 시 가스 방출 압력과 급격한 온도 변화로 고가 전산장비가 손상될 우려가 있으며, 산소 농도 저하로 인해 근로자는 질식사고 등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현재 해당 공간에 대한 출입금지 조치는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앞서 언급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매뉴얼이 마련되지 않았다. 또한, 공기호흡기 비치 및 질식 위험 경고 표지 부착 등 일부 조치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가스계 소화설비의 작동, 오작동 등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매뉴얼을 수립하고 관련 교육을 시행할 여지가 있다. 또한 잠재적 질식 위험 장소에 비상용 공기호흡기 등 관련 설비를 비치하고 위험성을 명확히 알리는 경고 표지를 추가 부착하여 비상시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개선 필요사항 요약】

1. 가스계 소화설비 설치 공간의 잠재적 위험에 대한 추가적인 안전조치 실시

【4】 위험 작업 및 상황 안전관리

핵심가치

기관은 고위험 작업 수행 중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작업허가제도와 노동자가 위험상황을 인지하였을 때 직접 작업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작업중지 요청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심사의견

기관은 규정 등에 따라 안전작업허가서를 발급·승인하며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다만, 일반위험작업 허가서의 경우, 안전교육 및 안전장구에만 체크되어 있어 위험물질의 구분 및 중량물 취급 작업 여부에 대한 사전 확인을 거쳐 허가서가 발급·승인되는 절차의 보완이 요구된다.

안전작업허가제도는 작업 시작 전 안전하게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고 확인하는 절차로 사고예방을 위해 그 중요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신청 및 승인 과정에서 각 담당자가 책임을 충분히 이행할 수 있도록 운영 실태 전반에 대한 점검 및 개선이 요구된다.

작업중지요청제는 불안정한 작업환경을 회피할 수 있는 제도로서, 기관은 중대재해가 발생 시 또는 급박한 위험상황에서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와 기준을 규정에 따라 운영하고 있다. 위험상황 시 작업중지 실시, 현장 확인·위험요인 개선, 현장상태 확인 후 작업재개 등의 순으로 절차를 마련하여 제도의 실행력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기관의 금년도 작업중지요청 건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교육 및 안전퀴즈를 통해 작업중지요청제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다. 제도의 내재화를 위해 근로자 대상 교육 확대, 다양한 신고채널 마련 등 적극적인 홍보 및 공유활동을 추진하여 이해도를 높일 필요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기관에서는 회의 등을 통한 출장업무가 수반되며, 이를 규정, 차량관리 예규 등에 명시하여 관리하고 있다. 출장업무가 안전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매뉴얼 정비 및 지속적 관리, 출장자 대상 보호구 지급 및 착용 등의 조치를 통해 출장업무 안전수준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개선 필요사항 요약】

1. 일반위험작업 허가서 내 위험물질의 구분 및 중량물 취급 작업 여부 사전 확인하는 절차 포함하도록 양식 개선 등 필요

3 「안전성과」 범주 심사

【1】 안전관리등급 심사 결과 개선 필요사항 이행 수준

핵심가치

공공기관은 전년도 안전관리등급 심사결과보고서에서 제시한 개선 필요사항에 대한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개선 완료 여부와 현장 적용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심사의견

〈개선 이행 심사〉

해당없음

〈개선 이행 노력〉

해당없음

[2] 안전경영책임 활동 및 성과(안전경영책임보고서)

핵심가치

공공기관은 안전경영책임계획 이행 상황에 대한 점검내용, 재해현황 및 다음 연도 주요 계획 등을 안전경영책임보고서로 작성하여 관리함으로써 주요 안전활동의 지속적인 이행과 발전을 통해 안전경영책임을 정착시켜야 한다.

심사의견

〈안전활동 추진 실적의 적정성〉

기관의 안전활동 주요 추진 실적 사항으로 첫째 자기규율을 통한 재해 예방 역량 강화, 둘째 근로자와 수급업체와의 소통·참여·공유 활성화, 셋째 SSIS 맞춤형 안전보건관리체계 강화를 확인하였다.

세부 활동을 통해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확인하였다. 첫째 자기규율을 통한 재해예방 역량 강화 활동으로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45001) 인증, 기관에 맞춤형 위험성평가 기법 개선, 지역센터 포함 정기위험성평가 실시, 안전보건 법규 및 내부 규정 간의 연계성 검토를 실천하였다. 둘째, 근로자와 수급업체와의 소통·참여·공유 활성화를 위해 기관장의 안전보건경영 리더십 확산, 협력업체 안전보건 자율 점검 체계 견인, 아차사고 사례 발굴, 분석, 전파, 공유를 강화하였다. 셋째, SSIS 맞춤형 안전보건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맞춤형 안전보건교육 및 안전활동 참여 활성화, 근로자 맞춤형 건강유지증진 프로그램 강화, 지역사회 및 취약계층 대상 안전활동 확대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실천 노력들 중 기관장의 안전보건경영 리더십 확산을 위해 안전보건경영 방침을 개정 검토한 부분에서 안전보건경영방침에 기관장 및 근로자 대표의 서명이 들어가 있는 부분은 노사가 공동 노력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만, 안전보건경영시스템에서 인증 유지를 위하여 내부심사원이 주관부서 담당자만 지정되어 전부서 내부 심사를 하고 있다. 이 부분에 내부심사원의 자격을 규정하고, 내부심사원 양성과정 교육을 진행하고 내부심사원들이 실질적인 심사를 할 수 있도록 내부심사 절차를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맞춤형 위험성평가 기법을 도입하는 부분에서 외부 업체에 위험성평가를 위탁하고 있어 맞춤형이라고 보기에 어렵다. 아울러 위험성평가 보고서를 살펴보면 담당자 성명, 위험성 개선 사항에 대한 개선예정일 및 개선 완료일 표기가 누락 되어 있어 위험성평가를 적정하게 했다고 평가할 수 없다.

그리고 위험성평가에 대한 사항이 「안전보건규정」에 명시되어 있고 이 부분의 세부규정으로

ISO 경영시스템 절차서 안에 위험성평가에 대한 상세 내용을 가지고 있다. 내용 안에 위험성평가 실시와 관련된 조직 및 역할이 명확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즉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관리감독자 및 위험성평가 담당자의 지정 및 역할이 명확하지 않아 현업에서 실제 작동될 수 있게 개선이 필요하다.

아울러 아차사고 신고제도를 운영하여 근로자의 참여를 유도하는 부분은 우수하다. 다만, 아차사고가 위험성평가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및 절차서를 개정하여 위험성평가 대상에 아차사고를 포함하여야 한다.

맞춤형 안전보건교육 및 안전활동 참여 활성화 부분에서 서울소방학교 및 광진구 민방위 교육센터와 연계하여 교육을 실시한 점은 우수하다. 다만, 비상대응 관련 활동 및 교육이 주기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련 지침에 명시가 필요하다.

근로자 맞춤형 건강유지·증진 프로그램 강화를 위해 근골격계질환 예방 특강, 전신스트레칭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우수하다. 다만, 직원의 심리·정서적 안정을 위하여 심리진단을 개인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전사의 직무스트레스 평가를 실시하여 기관 전체에 현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은 심리진단을 시행하는 외부 업체와 사전 조율하여 현황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임원 등의 안전활동 성과측정〉

임원 등의 안전활동 성과 측정 부분에서 근로자와 수급업체와의 소통·참여·공유 활성화를 위해 아차 사고 발굴 분석, 전파, 공유 강화를 통해 안전의식 수준이 88.3점에서 88.5점으로 향상된 것을 확인하였다. 이 지표는 안전가치, 안전운영, 안전교육, 안전소통의 항목을 평가하여 각 항목의 환산 점수의 평균 수치로 기관의 꾸준한 안전보건활동 노력이 우수하다. 다만, 이 평가는 근로자 대상으로 수급업체 대상은 아니므로 성과 부분을 근로자 및 수급업체 대상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맞춤형 안전보건관리체계 강화를 위하여 맞춤형 안전보건교육 및 안전활동 참여 활성화를 실시하여 안전보건교육 이수율이 95.73%에서 96.02% 향상된 것을 확인하였다. 다만, 이 지표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근로자, 관리감독자의 교육 및 관리책임자 등의 교육 등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지 근거와 기준을 명확히 한 후에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임원 등의 안전활동 성과측정 부분은 목표와 내용이 혼재되어 있으며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며, 성과측정의 실적도 양호, 보통, 불량외의 정성적으로 이루어져 있어 정량적인 평가로 개선되어야 하며 실적은 목표에 따른 예산까지도 함께 포함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

〈안전경영책임 활동에 대한 자체심사(Audit) 실시〉

기관은 안전경영 활동에 대한 자체 심사 평가를 위하여 자체 평가 체크리스트를 보유하고 있다. 체크리스트의 주요 실행 과제 항목으로는 근로자 참여를 통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고도화, 위험성평가 실효성 향상을 통한 자기규율 예방체계 강화, 도급사원 안전보건 관리 강화, 안전보건교육 및 보건관리 내실화 등 종합적인 부분에 대한 체크리스트이다. 다만, 안전경영책임 활동 자체 심사 전 내부심사원(안전지킴이) 대상으로 교육계획 및 실시가 필요하다.

〈안전경영책임계획 이행 실적에 대한 주무부처 점검 및 후속조치 계획수립 여부〉

기관은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에 의거, 주무기관 협의 및 이사회 승인을 거쳐 안전경영책임계획을 확정해야 한다. 그간 주무부처 담당자가 비상임이사로서 이사회 의결에 직접 참여함에 따라 실질적인 계획안 공유와 검토가 이루어져 왔으나 공식문서를 통한 협의절차의 기록 관리 측면에서는 다소 미흡함이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행정적 절차의 투명성과 완결성을 높이기 위해 향후 계획수립 시에는 공식적인 주무기관과의 사전 검토 절차를 의무화하고 검토 의견에 대한 피드백 과정을 명문화하여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

【개선 필요사항 요약】

1. 임원 등의 안전활동 성과측정의 목표와 내용을 명확히 구분하고, 정량적인 평가로 개선이 필요하며, 실적은 목표에 따른 예산까지도 포함하여 객관적 평가 실시

[3] 대국민 안전문화 확산 노력 및 성과(안전경영책임보고서)

핵심가치

공공기관은 대국민, 지역사회 및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하나의 안전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심사의견

<기관이 종사자를 위해 추진한 안전문화 확산 노력>

기관은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안전의식 수준진단을 시행하였으며 대상자 750여명의 약 69%(515명)가 참여하는 높은 호응을 얻었다. 안전보건공단의 표준 문항 중 우리 기관의 특성에 부합하는 4개 분야(가치·운영·교육·소통) 17개 문항을 발췌하여 객관적인 안전수준 파악에는 기여하였으나 향후 기관 고유의 안전문화 활동과 보다 밀착된 성과 연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따라 기관 특화형 안전문화 지표를 포함하여 설문을 추진하고 누적 데이터에 기반한 다각도 분석을 통해 실질적인 시사점 도출 후 진단 결과가 책임계획 수립과 환류로 이어지는 선순환 안전 거버넌스를 구축함으로써 더욱 체계적인 안전문화 정착 활동 전개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기관은 근로자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게이미피케이션(Gamification) 요소를 도입한 참여형 안전 퀴즈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일상 업무 중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회당 15분의 정기 안전교육 이수 시간을 인정하는 실질적 인센티브 체계를 구축하였다. 그 결과 25년 한 해 동안 총 8회차(27문항)에 걸쳐 누적 2,542명의 높은 참여 실적을 기록하며 전사적인 안전 공감대를 형성하였고 26년 안전경영책임계획 지속추진과제로 반영하여 안전문화의 연속성을 확보하였다.

기관은 임직원과 수급업체 근로자의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고 유해 요인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맞춤형 건강유지·증진 프로그램으로 근골격계 유해 요인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작업 환경 내 잠재적 위험을 사전에 제거하고 근로자별 자율 건강관리 역량을 강화하였다.

현장의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스마트앱 “안전신문고”를 자체 개발하여 상시 운영 중이며 누구나 위험 요소를 즉시 신고하고 처리 과정을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는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함으로써 위험 요인의 신속한 제거와 안전 정보의 투명한 공유 체계를 구축하였다.

또한 매월 4일이 포함된 주간에 “안전점검의 날”을 지정하고 17개 전 조직(9개 본부

및 임시 조직 포함)을 대상으로 테마 중심의 자율 점검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안전경영지원부 주관으로 월별 중점점검 사항을 배포하고 체크리스트 기반의 조치 이행 여부를 환류하고 있다. 향후에는 기존의 정형화된 체크리스트 점검 체계를 넘어 배포된 테마 외의 잠재적 유해·위험요인까지 능동적으로 발굴·기록함으로써 정기점검의 실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단순 확인 위주의 점검에서 탈피하여 현장 주도의 위험성 파악과 실질적인 위험 제거가 유기적으로 맞물리는 현장 밀착형 융합 점검 모델로 고도화할 수 있을 것이다.

〈기관이 대국민(종사자 제외)을 위해 추진한 안전문화 확산 노력〉

기관은 장기화된 폭염에 대응하고자 로비 공간을 상시 개방하여 국민 누구나 이용 가능한 무더위 쉼터를 운영하였고 생수 제공 등 생활 밀착형 지원을 병행하여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고 지역주민의 온열질환 예방에 기여하였다.

단순 정보 전달에서 탈피한 “가을정원 음악회” 연계 안전 캠페인을 개최하여 안전에 대한 지역사회 자발적 관심을 유도하였다. 특히 행사 중 실시한 주민 인식 조사를 통해 우리 동네 안전 활동 선호도와 교육 수요를 심층 분석하였으며 도출된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지역 특성을 반영한 구체적인 지역사회 안전문화 확산 실행방안을 수립하였다.

그리고 기관의 고유사업과 연계하여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고령층·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한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전개하고 있다. 화재 및 활동 감지 센서를 활용해 응급상황을 실시간으로 포착하고 119 및 지자체와 즉각 연계하는 디지털 기반의 안전 돌봄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병원 동행 등 실질적인 구호 활동으로 연결되는 안전문화의 선도적 모델을 제시하였다. 또한 광진구청과 협력하여 ‘함께해요, 건강 복약’ 사업을 운영함으로써 고령층의 올바른 약물복용 습관 형성을 지원하고 있다. 이는 지역사회 약물 오남용 방지와 보건 안전망 강화를 목표로 광진구청과 협력하여 생활안전 문화활동으로 정착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안전문화 확산 활동 노력(①과②)에 따른 성과〉

기관은 근로자의 건강권을 선제적으로 보호하고자 임직원 및 15개 협력사 종사자 등 총 368명을 대상으로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현시점에서의 부담 작업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잠재적 질환 발생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1:1 맞춤형 교정 테라피’를 시행하여 실효성 있는 사후관리를 추진하였다. ’26년 안전경영책임계획 내 근골격계질환 예방교육 및 전문 프로그램 운영 과제로 강화하여 추진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일회성이 아닌 지속 가능한 안전문화 추진활동으로 고도화하였다.

가을정원 음악회와 연계한 지역국민 설문조사 결과, 주민 참여형 치안·안전 활동과 심폐소생술

교육에 대한 지역주민의 높은 수요를 확인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보건복지행정타운 입주 기관 간 합동 안전체험 교육의 필요성과 화재 취약계층을 위한 초기대응 물품지원의 시급성을 도출하였다. 기관과 광진소방서는 지역사회 화재 예방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실질적인 협력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보건복지행정타운 입주공공기관 합동 안전체험 교육을 2026년 안전경영책임계획의 핵심 세부 과제로 편성하여 공공기관 간의 협업 교육 모델 프로세스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대국민 안전문화 확산의 핵심 활동으로 전국 276,954대(노인 264,274대, 장애인 12,680대)에 달하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및 지자체와 연계된 거점 응급관리 체계를 통해 일평균 68,826건의 케어콜을 발송하였으며 4차에 걸친 철저한 안전 확인 프로세스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실질적 성과를 거두고 있다.

기관이 추진 중인 다양한 안전문화 활동에 대한 저조한 임직원의 자발적 참여 접점을 확대하고 운영 성과와 한계점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PDCA 기반의 선순환 환류 체계를 공고히 하여 기관 내·외의 사고사망을 원천 예방하고 대국민 안전문화 확산에 실질적으로 기여해 나가길 기대한다.

【4】 사고사망 감소 성과 및 노력도

핵심가치

공공기관은 안전활동을 통해 안전관리 대상 사업·시설과 관련된 모든 종사자의 사고사망 예방 등 안전성과를 창출하여야 한다.

심사의견

〈사고사망 예방 실적〉

기관은 2025년 산업재해통계 승인 기준 사고사망자가 없었다.

〈사고사망 감소 성과〉

기관의 사고사망 승인은 심사 대상연도 직전 3년('22년~'24년) 평균 0명에서, '25년 0명으로 동일하였다.

〈사고사망 대응 노력도〉

해당없음